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27 발의연월일: 2021. 10. 29.

발 의 자 : 윤준병 · 위성곤 · 이용빈

오영환 • 전재수 • 문진석

정일영 · 강선우 · 김교흥

이수진(비) · 김성주 · 김수흥

안호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해당 농지가 농사에 이용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 동안 직접지불금 등을 받은 실적이 없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도록 한 기본직접지불금이 농업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공익수당"의 개념이 아닌 "조건부수당"이 되어버린 결과를 가져왔음.

이로 인하여 해당 3년간 직접지불금 등의 수령자격이 있었음에도

인지 미흡, 낮은 단가, 신청절차 복잡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않았던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농촌에서 이에 대한 불만 이 상당한 실정임.

또한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농가당 연간 120만원으로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및 도농 간 소득양극화 해소에 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대상농지의 요건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 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한편,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법률에서 240만원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익직불제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농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농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농지등"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 을 "지급방법"으로 한다.
 - ④ 소농직접지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는 24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지등) ①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	
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	
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	
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	
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	
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이용된 <u>농지등</u>	<u>농지등</u> .
<u>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u>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	
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	
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	
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u>.</u>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 나. (생 략)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 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 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 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2 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 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 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 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나. (현행과 같음)
2
<u>농지등</u>

가. • 나. (생 략)

-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 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 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 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 는 경우
- ② ③ (생 략)
- 제10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제10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소농직접지불금의 <u>구체적인</u>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3.	·	· 나.	(현행과	- 같음)	
	<u> 동</u> 조	<u> 6</u>			

② · ③ (현행과 같음)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농직접지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는 240만원으로 한다.

<u>(5)</u>	 	 	- <u>시</u> 달	한법